의안번호	제 712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4월 30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2

제안연월일 : 2021년 4월 30일

제 안 자: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조례안 예고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3. 행정문화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U대회추진과,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행정문화위원회	3. 행정문화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U대회추진과,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에 관한 사무
-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 · 조정 요청
-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 ③ 생략
 -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관계조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3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 4. 30.>